|  |  |  |
| --- | --- | --- |
| **수입화물 분산(疏港分流) 관련 사항 명확화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8년 제168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출입국운송수단 적화목록 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172호로 공포, 해관총서령 제240호에 의해 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 분산 작업을 진일보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항구구역에 보관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반드시 분산(疏港分流)시켜야 하는 수입 냉동물품, 신선식품, 특수물품(미생물, 인체조직, 생물학적 제품, 혈액 및 그 제품 등), 약품, 위험화학품 등 특수화물에 대하여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 경영인은 분산(疏港分流) 작업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기 상황 이외에, 항구의 화물 체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분산(疏港分流) 작업을 신청할 수 있다.  2. 수입화물의 분산(疏港分流) 작업은 동일 항구 내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또는 한 항구에서 공공(公共) 퇴적 사업을 경영하는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로 이뤄져야 한다.  3. 수입 고체폐기물에 대한 분산(疏港分流) 작업은 금지한다.  4. 분산(疏港分流) 화물의 국내 도로운송이 필요한 경우 세관의 봉인표지 또는 상업용 봉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공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8년 11월 14일 |  | **关于明确进口货物疏港分流有关事项的公告**  海关总署公告2018年第168号  　　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境运输工具舱单管理办法》（海关总署令第172号公布，根据海关总署令第240号修改）有关规定，为进一步规范进口货物疏港分流作业，现对有关事宜公告如下：  　　一、对因港区不具备存放条件必须疏港分流的进口冻品、生鲜、特殊物品（微生物、人体组织、生物制品、血液及其制品等）、药品、危险化学品等特殊货物，海关监管作业场所经营人可申请开展疏港分流作业。除上述情况外，仅允许在防止货物阻塞港口的情况下，申请开展疏港分流作业。  　　二、进口货物疏港分流作业，应在同一港口范围内由一个港区向另一个港区，或由一个港区向从事公共堆存的海关监管作业场所开展。  　　三、进口固体废物禁止办理疏港分流业务。  　　四、疏港分流货物需开展境内公路运输的应施加海关封志或商业封志。  　　本公告自2019年1月1日起实施。  　　特此公告。    　　海关总署  　　2018年11月14日 |